

일본 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사태의 다차원적 분석 및 한일 양국의 향후 정책적 대처 방안

사태의 발단과 지정학적·역사적 맥락의 심층 해부

2022년 7월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정치적 암살 사건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일본 사회 저변에 수십 년간 암약하며 누적되어 온 거대한 사회·경제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일 범죄를 넘어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 권력 간의 유착, 그리고 개인의 기본권 침해라는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결정적 촉매제로 작용했다. 2026년 1월, 일본 사법부 1심 재판부가 피의자 야마가미 데쓰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동기가 다시 한번 명확히 공표되었다.¹ 야마가미는 자신의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에 거액을 헌금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통일교 행사에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교단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판단한 아베 전 총리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² 재판 과정에서도 통일교에 심대한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성이 범행의 기저에 있었음이 재차 확인되었다.¹

이 비극적 사건은 일본 사회 전반에 전례 없는 충격파를 던졌으며, 1954년 한국에서 창설되어 일본에 진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통일교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국가 안보 및 시민권 수호의 핵심 의제로 격상시켰다.² 특히 통일교가 조상의 원한이나 악연 등을 구실로 신자들에게 고가의 물건을 강매하거나 거액의 헌금을 유도하는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의 실태가 낱알이 폭로되면서, 교단의 행위가 단순한 종교적 일탈을 넘어선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⁴ 나아가 집권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의 주류 정치권 인사들이 선거 지원, 언론, 교육, 자원봉사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통일교 유관 단체들과 깊숙이 교류해 온 '정교유착(政教癒着)'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일본 정부는 국가적 신뢰 회복을 위해 교단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리게 되었다.¹

통일교의 지정학적, 교리적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본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 통일교는 기독교적 교리에서 출발했으나 정통 기독교와는 궤를 달리하며, 창시자인 고(故) 문선명 총재와 부인 한학자 총재를 인류 구원의 주체인 '참부모'이자 재림 메시아로 규정한다.² 이러한 교리적 토대 위에서 통일교는 한국을 인류 구원의 중심인 '아담 국가'로, 일본을 '해와(이브) 국가'로 설정하는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했다. 해와 국가인 일본은 과거 아담 국가인 한국을 침략하고 핍박한 원죄가 있으므로, 이를 속죄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부를 한국 본단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신자들에게 주입되었다.²

이러한 교리적 가스라이팅은 일본 내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이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수탈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했다. 통일교의 전체 신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창립국인 한국의 신자 수는 애초 30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국내 통일교 신도 명단 문서에 따르면 최대 1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² 반면 일본의 통일교 신자는 약 6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² 수치상으로는 한국의 신자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교단의 실질적인 자금줄과 글로벌 사업의 재정적 젖줄 역할을 해온 절대적인 주축은 경제 대국인 일본의 60만 신자 조직이었다. 일본 내 신자들에 대한 고도화된 착취 구조가 한계에 다다르며 폭발한 것이 바로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이라는

파국적 결말이었으며, 이에 따른 일본 정부와 사법부의 대응은 단순한 사이버 종교 규제를 넘어 공공복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방어하기 위한 전면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사법부의 해산명령 청구와 심층적 법리 해석

통일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일본 문부과학성은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질문권을 사상 처음으로 행사하며 약 1년여에 걸친 대대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진행했다.⁶ 행정부의 이러한 전방위적 사실 파악과 실태 규명 작업은 결국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라는 일본 헌정사상 극히 이례적인 법적 조치로 귀결되었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엄격히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종교 단체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것은 고도의 법리적 정당성과 명백한 범죄 소명이 요구되는 중대 사안이다.

1심 및 2심 재판부의 해산 인용과 법적 근거

도쿄지방법원(1심 재판부)은 철저한 심리를 거쳐 2024년 3월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공식적으로 내렸다.⁶ 교단 측은 즉각 항소했으나, 도쿄고등재판소(2심 재판부) 역시 지난달 심리를 모두 종결하고 1심의 해산 판단을 재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² 사법부가 통일교의 존립 기반을 해체하는 판결을 내린 핵심적인 법리적 근거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도출되었다.

첫째, 현저한 공공복리 침해의 지속성이다. 법원은 통일교의 악질적인 헌금 권유 행위가 종교법인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며, 신앙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고려하더라도 해산명령은 불가피할 정도로 현저히 공공복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² 이는 종교 단체가 교리를 미끼로 신도들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사회 통념을 벗어난 수준의 과도한 재산 교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묵인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⁵

둘째, 피해 규모의 막대함과 회복 불가능성이다. 법원이 인용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액 기부 및 영감상법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 수는 최소 1,500명 이상에 달하며, 이들의 피해 금액 및 법적 배상 요구액은 약 204억 엔(한화 약 1,900억 원에서 2,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선 '유례없는 막대한 피해'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붕괴되고 개인의 존엄이 파괴되었다고 지적했다.⁶

셋째, 불법행위의 조직성과 개선의 여지 부재다. 재판부는 이러한 착취 행위가 일부 신도나 하부 조직의 일탈이 아니라 교단 본부의 치밀한 계획과 지시 아래 이루어진 조직적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통일교 측은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자체적인 예산 감액 조치를 단행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 금액 변제를 시작했다며 자정 능력을 입증하려 했다.⁵ 교단은 이러한 노력을 근거로 해산명령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⁶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교단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인 헌금 강요 교리를 스스로 부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점, 그리고 사회적·도덕적 책임 차원에서의 피상적인 대응에 그친 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⁵ 법원은 교단의 이러한 행보가 위기 모면을 위한 '일시적 대응'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향후 언젠가 다시 과도한 헌금 목표를 설정하고 불법을 자행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았다.⁵ 결론적으로 자발적 개선을 기대하기 불가능한 조직에 대한 실효적 수단은 법인격의 해산을 명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⁵

교단의 강경 대응과 대법원 특별항고 절차

사법부의 일련의 철퇴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측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결사항전의 태세를 보이고 있다.

아베 도시코 문부과학상이 해산명령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의 주장이 인정받았음을 강조하자, 통일교 측은 신자 5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국가 권력에 의한 종교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강력히 반발했다.⁴

특히 도쿄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 직후 통일교(가정연합)는 한국의 세계일보를 비롯한 유관 언론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사법 판단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³ 이들은 아베 살해범인 야마가미 데쓰야가 '가정연합을 원망해 타격을 주고 싶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교묘하게 역이용하여, 일본 법원의 해산 결정이 "살해범의 범죄적 욕망을 국가 차원에서 실현해 주는 촌극"이자 "증거재판주의에 반해 내려진, 결론이 미리 정해진 마녀사냥식 판단"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대법원에 특별항고 절차를 밟을 것임을 선언했다.³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해산명령이 확정될 경우, 통일교는 일본 내에서 종교단체로서 누려왔던 특권적 지위인 '종교법인격'을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⁶ 이는 법인세, 고정자산세 등의 면제 혜택을 전면 박탈당함을 의미하며, 조직의 재정 운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됨을 시사한다.⁶ 다만, 헌법상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므로 법인격 상실이 곧바로 종교상 행위 자체의 금지나 개인의 신앙활동 불법화로 직결되지는 않으며, 이들은 임의 종교 단체로 존속할 수 있는 법적 공간이 여전히 남아있다.⁴

과거 판례와의 비교 분석 및 최종심 확정 타임라인

통일교의 해산명령 청구에 대한 일본 사회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과거 일본 사법부가 종교법인 해산을 명령했던 핵심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의 타임라인과 향후 전개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종교법인법에 따라 해산명령이 확정된 주요 사례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구분	대상 종교법인	주된 해산 청구 사유	사법 처리의 특성	해산명령 확정 소요 기간	본 사태와의 시사점
과거 판례 1	옴진리교 (Aum Shinrikyo)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등 다수의 반인륜적 살인 및 테러 범죄	국가 안보와 생명에 직결된 명백하고 물리적인 형사 범죄로, 증명 책임이 상대적으로 명확함.	약 7개월	테러 행위에 준하는 신속한 법적 처리가 이루어짐. 통일교의 경우 물리적 테러가 아니므로 이보다 지연될 수밖에 없음.
과거 판례 2	묘카쿠지 (명각사)	영감상법을 통한 사기적	무형의 심리적 지배와 교리를	약 3년	본 통일교 사태의 양상 및 범죄

	(Myokakuji)	금전 편취, 조직적인 과다 현금 강요 행위	빙자한 사기 행위를 입증해야 하므로 민형사상 공방이 치열함.		수법과 가장 유사함. 통일교 역시 장기적인 법정 공방과 지연 전술을 구사할 것임을 예고함.
현재 진행형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구 통일교)	유례없는 대규모 영감상법 및 고액 현금 강요, 1,500명 이상의 피해와 가정 파탄 야기	최소 204억 엔의 입증된 피해액. 교단 측의 강경한 탄원과 정치권 유착 의혹 방어 논리 전개 중.	현재 진행 중 (1심, 2심 해산 인용, 대법원 계류 예정)	묘카쿠지의 선례를 고려할 때,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발생할 것이며 이 기간 내 자산 보전이 핵심 쟁점임.

상기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리적인 가스 테러를 자행하여 형법상 살인죄가 명백히 성립되었던 옴진리교의 경우 해산명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 불과 7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⁴ 반면,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부적이나 기도를 강매하는 등 영감상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묘카쿠지(명각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진술과 사기 행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최종 해산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⁴

현재의 통일교 사태는 옴진리교보다는 묘카쿠지의 사례와 궤를 같이한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신속하게 해산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특별항고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교단 측은 대형 로펌을 동원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시간을 끄는 지연 전술을 극한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³ 전문가들은 향후 일본 정부와 통일교 사이에 벌어질 이 지루한 대법원 법적 공방 기간이야말로, 교단이 자산을 현금화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교단 자산 규모의 추산과 자본 은닉 및 우회 승계의 구조적 리스크

해산명령 청구에 따른 통일교의 종교법인격 상실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가운데, 사태의 중심축은 '종교적 심판'에서 실질적인 '자산의 처분 및 피해 배상'이라는 경제적 영역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일본 고등재판소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일본 통일교 교단이 보유한 공식적인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의 총규모를 약 1,040억 엔(한화 약 1조 원) 내외로 파악하고 있다.¹¹

법적 절차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교단의 해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고액 현금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권 신청을 받는 청산 절차가 개시된다. 국가가 선임한 청산인이 이 1,040억 엔 규모의 자산을 처분 및

현금화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복구해 주는 방식으로 구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¹¹ 그러나 이 청산 절차는 이론적으로는 매끄러워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심각하고 다층적인 2차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자본의 해외 유출 및 고의적 자산 일실(逸失) 위험이다. 입헌민주당 국회 리포트 및 야당의 정책 문서에 따르면, 통일교는 과거 수십 년간 매년 수백억 엔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한국의 교단 본부 등 해외로 지속적으로 송금해 온 정황이 뚜렷하다.⁹ 해산명령 청구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약 1,550명의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 및 해결금이 약 204억 엔으로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법적으로 자산을 강제 동결할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² 즉, 교단이 판결 지연 전술을 펴면서 부동산을 은밀히 매각하고 금융 자산을 페이퍼 컴퍼니나 해외 계좌로 지속 송출할 경우, 승소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으려 할 때 교단의 금고가 텅 비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짙은 우려가 존재한다.⁹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 금액(Effective Relief)을 모델링해 보면 다음과 같은 논리적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text{Effective Relief} = \sum (\text{Initial Identified Assets}) - \int_{t=0}^{t_{\text{final}}} \text{Capital Flight Rate}(t) dt - \text{Liquidation \& Legal Costs}$$

여기서 t_{final} 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자본 유출 속도의 적분값이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배상액은 0에 수렴하게 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

두 번째 리스크는 '천지정교' 등 유관 단체를 통한 합법적 위장 승계 전략이다. 법인 청산 절차 시 피해 배상을 마치고도 남은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혹은 배상 채권액을 축소시켜 자산을 보존할 경우 이 자산의 귀속처가 문제가 된다. 통일교 교단 측은 법인 해산 시 남은 잔여 재산의 귀속처를 홋카이도에 위치한 관련 종교법인인 '천지정교(天地正教)'로 정관상 지정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¹¹ 천지정교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종교 단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통일교의 교리를 추종하거나 깊이 연관된 자매 교단 또는 위장 단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본체가 법인격 상실이라는 철퇴를 맞더라도, 동일한 신앙적 뿌리와 지배구조를 공유하는 다른 껍데기(법인)로 자산을 합법적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조직의 명맥과 천문학적인 부를 고스란히 유지하려는 고도의 우회 전술이다. 일본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꼼수 자산 승계를 법적으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¹¹

세 번째 리스크는 물리적 공간을 탈피한 온라인 기반 '임의단체'로의 진화다. 대법원 판결로 종교법인격을 상실하여 예배당과 같은 거점 물리적 시설을 처분당하고 운영에 제동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시민들의 종교상 행위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므로 불가능하다.⁴ 교단은 이미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예배 방식으로 신도 모임을 전환하여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¹¹ 이는 전통적인 물리적 집회 장소가 없어도, 디지털 공간의 무한한 확장성을 활용하여 신자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교묘하게 온라인 헌금을 유도할 수 있는 현대 사이버 종교의 진화된 생존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종교법인이 아닌 일반 '임의단체'로 전략하더라도 이들의 착취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피해자 구제 및 재산보전 특례법을 둘러싼 일본 정치권의 입법 역학

통일교에 의한 다수의 범죄 사실이 폭로되자 일본 국회와 정치권은 초기 자민당과 통일교 간의 부적절한 유착 고리를 끊어내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대중의 공분이 법의 실효성 확보로 쏠리자 점차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복잡한 입법 전쟁으로 전선을 이동시켰다.⁹

부당 기부 권유 방지법의 성립과 '배려 의무' 논란

사건 발생 직후인 2022년 말,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협상 끝에 고액 기부 대책인 '부당 기부 권유 방지법'이 성립되었다.⁹ 그러나 이 법안 성립 과정과 국회 질의 응답에서는 치열한 법리적 대립이 발생했다. 제210회 임시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신법의 뼈대 중 하나인 이른바 '배려 의무(Duty of Care)'라는 모호한 개념이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⁷ 정부와 여당은 종교법인법 상의 배려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악질적인 기부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헌금을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⁷ 그러나 입헌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서 볼 수 있듯, "기부 권유에 있어서의 배려 의무라는 대원칙하에 금지 행위를 규정할 때 과연 무엇을 악질로 보아 처벌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⁷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순수한 종교적 헌금과, 마인드 컨트롤이나 심리적 지배를 이용한 강압적 헌금을 수치나 문서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고도의 입증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이처럼 배려 의무라는 용어가 주는 법률적 불투명성은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⁷

2024년-2025년 재산보전법안의 충돌과 여야 타협

이후 해산명령 청구가 가시화되면서 교단의 고의적인 자산 유출 우려가 극에 달하자, 야당과 여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2차전으로 돌입했다. 입헌민주당 국회 리포트 2024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제212회 임시국회에서 입헌민주당은 일본유신회 등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해산명령의 청구 등에 관련된 종교법인의 '재산 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구 통일교 재산보전법안)'을 전격 제출했다.⁹ 이 법안은 1,040억 엔 규모의 재산이 해외로 반출되거나 은닉되어 피해 배상이 불가능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대법원 판결 전이라도 국가가 선제적으로 교단의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는 초강력 조치였다.⁹ 그러나 자민당 등 여당의 반대 논리에 밀려 찬성 소수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었다.⁹ 여당은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위헌성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자민당, 공명당 연립 여당과 국민민주당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들만의 완화된 대안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⁹ 이 대체 법안의 핵심 장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 부동산 처분 감시 체계 신설:** 해산명령이 청구된 종교법인, 즉 통일교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국가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현)에 통지를 의무화하였다.⁹ 이로써 은밀한 매각을 막겠다는 의도다.
- 재무 투명성 의무화:** 교단은 3개월마다 재무 서류와 자산 현황을 관할 관청에 정기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는 피해자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⁹
- 소송 비용 지원 확충:** 피해자가 헌금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쉽도록, 일본 사법지원센터인 '법 테라스'가 변호사 비용의 대납 등 법률 구조 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조치를 신설했다.⁹

입헌민주당은 초기에 이 정부 대안 법안이 재산의 즉각적 동결에 비해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했으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법안 성립 후 3년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실제 재산 보전의 방식을 포함해 실효성을 재검토하겠다"는 확답을 얻어낸 뒤 대승적 차원에서 수정안에 합의했다.⁹ 이 입법 타협의 산물은 통일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지연시키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1차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품 보관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해외 다중 계좌로의 분산 송출 등 금융 자산의 치밀한 유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열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내 파급 효과 및 본단의 재정적·교리적 위기

일본에서의 통일교 퇴출 수순은 단순히 일본 영토 내에서의 사회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정학적, 교리적으로 수십 년간 거미줄처럼 깊이 연결된 한국 통일교 본단, 나아가 여타 한국발 신흥 사이비 종교 단체 전반에 막대한 연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단 대처 전문가들과 종교사회학계는 일본 통일교 법인격의 해산이 곧 한국 통일교의 심각한 재정적 위기와 교리적 정체성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⁵ 앞서 언급했듯이, 통일교회는 교리적으로 일본을 모든 경제적 헌신의 주체이자 '어머니의 나라'로 삼아왔기 때문에², 60만 명에 달하는 일본 신도들의 자금줄이 원천 차단되고 1조 원대에 달하는 현지 자산이 피해 구제로 압류되거나 청산될 경우, 한국 본단의 유지 동력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⁵ 세계 각지에 설립된 대형 병원, 대학, 언론사, 관광 리조트 사업 등 통일교가 글로벌 스케일로 전개해 온 막대한 프로젝트의 뒷받침에는 일본 헌금이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므로, 일본의 몰락은 곧 글로벌 제국의 수축을 의미한다.⁵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재림 메시아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야 하는 해외 국가의 몰락은 신도들에게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내부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1.2M 명이라는 한국 내 신자 추산 규모에도 불구하고², 이는 명목상의 숫자일 뿐 실제 핵심적인 자금 동원력은 철저히 일본 신자들의 피땀 어린 헌신에 의존하고 있었던 구조적 모순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통일교 측이 "한국 통일교는 정교유착과 고액 헌금 논란으로 몰락의 길에 접어든 일본 통일교와 교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기에, 일본 법원의 판결에 사활을 걸고 대법원에 호소하는 것도 이러한 절박함의 발로라 할 수 있다.³

유사종교피해대책 규제법 제정 촉구 및 한국의 사회적 연대 대응

이러한 일본의 전면적인 정부 개입과 강력한 입법 규제 움직임은, 그동안 종교 단체의 사기 행각에 대해 비교적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한국 사회 내에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이라는 폭발적인 여론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¹³

한국에서는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아가동산 등 다양한 신흥 유사 종교들이 신도들의 삶과 인권을 유린하는 사기 행각을 벌여왔으며, 구리이단상담소장 신현욱 목사(전 신천지 교육장)의 주장에 따르면 그 결과 종교를 빙자한 사기범죄 피해자들이 무려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사이비 포교의 최적 무대가 된 상황이다.¹³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 등 이단 대처 전문가들은 헌법 제20조가 명시한 '종교의 자유'가 진리의 추구하고 내면적 양심을 보장하는 것이지, 이를 악용한 '종교 사기 행위의 자유'까지 방임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¹³ 전문가들은 프랑스(아부피카르브 등),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등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이비 단체를 지정하고 엄격하게 감시, 제재하는 유럽의 선진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회가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¹³

유사 종교 사태 대응을 위해 이단 단체 피해자들과 청춘 반환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홍종갑 변호사 등은 한국적 현실에 부합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촘촘한 법적 대처 방안들을 포럼 등에서 제시했다.¹³ 주요 입법 청원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포교 시 종교 실명제 전면 도입:** 설문조사, 동아리 가입, 심리테스트 등을 빙자하여 자신의 소속

교단을 숨기고 접근하는 기망적 포교를 전면 금지하며, 위반 시 단순 과태료가 아닌 강력한 형사 처벌 조항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¹³

2. **가정 내 종교 상담 방해 행위의 형사 처벌:** 사이버 종교의 가장 큰 피해인 가족 파괴를 막기 위해, 교단이 개입하여 피해자가 가족 및 이단 대처 전문가와 종교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물리적·정신적으로 조직적 방해할 경우 이를 중범죄로 다스리는 규정 신설.¹³
3. **피해자의 민사 입증 책임 완화:** 사이버 교리의 특수성과 합숙 세뇌의 폐쇄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금 강요 등 사기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거증 책임을 완화시켜 교단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받아낼 수 있는 조치 마련.¹³
4. **국가 주도의 신고 센터 설치:**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사종교 피해자를 위한 전담 공공 신고 센터 및 지원 기구를 설치하여 일원화된 모니터링을 시행.¹³

나아가 민간 차원의 한일 간 국경을 초월한 기독교 단체 공조도 활성화되고 있다. 현대종교 등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기독교단은 신사나 불각에 훼손 행위를 하는 등 모호한 범죄적 행위를 저지르며 기존 교파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 한국계 신흥 컬트 단체들이 현지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다고 호소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¹² 이들은 현지 피해자, 여행자, 유학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내 상담 창구 이메일(japanidan@uccj.org)을 개설하고 연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한국어 및 일본어로 번역된 예방 팸플릿을 공동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사이버 종교의 세계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 민간 안전망을 가동하고 있다.¹²

향후 한일 양국의 정책적 대처 방안 및 포괄적 제언

지금까지의 사법적 해산 판결과 자산 처분 통지 입법 등 일련의 정부 대응은 아베 전 총리 피격이라는 비극적인 사태의 충격에 반응하여 통일교라는 단일 교단에 가해진 응급처치의 성격이 짙다. 향후 일본 대법원의 최종 해산명령 확정 시점과 무관하게, 고도로 지능화되고 자본화되는 반사회적 유사 종교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대책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첫째, 자산 청산 과정의 누수 방지를 위한 강력한 동결 기전과 한일 금융 추적 공조의 강화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는 현행 '부동산 매각 시 사전 통지' 위주의 연성 규제를 넘어서는 실효적 자본 묶기이다. 정부와 입법부는 부동산 이외의 은닉형 자산, 즉 고가의 미술품 컬렉션 조각투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블록체인 지갑, 그리고 다단계식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형 유출을 즉각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통일교 재산보전법안이 비록 입헌민주당의 최초안에서 후퇴했다 하더라도⁹, 정부 약속에 따라 3년 이내 재검토 기간에 범죄 소명이 유력한 경우 법인 계좌를 강제 가압류할 수 있는 '보전처분 특례의 즉각적 발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더욱이, 해산명령의 철폐를 피하기 위해 '천지정교' 등 교리적으로나 인적 구성상 긴밀히 연계된 위장 우호 단체로 자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장기 임대 형식으로 빼돌리는 꼼수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¹¹ 이를 위해 해산명령 청구 시점부터 그 대상 단체와 지배관계에 있는 종속 및 특수관계 법인으로의 잔여 재산 인도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책이 입법화되어야 한다.¹¹ 또한 한일 양국의 경제 구조 특성상, 일본 내 현금이 한국의 계좌로 대규모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양국 관세청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간의 상시적인 핫라인 구축과 의심 거래(STR) 정보 교환 공조가 필수적이다.

둘째, 임의 단체 및 디지털 종교 생태계에 대한 국가적 감시 체제와 과세 사각지대 해소 대법원 판결로 종교법인의 지위가 소멸되어도 유튜브 기반 온라인 현금 시스템과 소규모 가정집 모임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갈 임의 단체로의 진화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¹¹ 국가 권력은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을 피하면서도,

금융거래 시 이들의 활동을 면밀히 통제해야 한다.⁴ 이를 위해 법인격이 없는 사적 모임이 현금이나 후원금의 명목으로 특정 계좌로 자금을 모집할 시, 단순 후원이 아닌 재화와 용역의 대가 성격(영감상법 연장선)으로 간주하여 조세 당국 차원의 전방위적이고 징벌적인 과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거대 글로벌 플랫폼(유튜브, 페이스북, 라인 등) 기업들과 다자간 정보기술 협약을 맺고, 사기 혐의나 공공복리 위반으로 해산된 전력이 있는 종교 그룹이 운영하는 현금 유도성 콘텐츠 채널을 AI 모니터링으로 신속히 적발하여 송출 중단 및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민관 연합의 디지털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심리적 지배(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민사 법리의 패러다임 전환과 쿨링오프(Cooling-Off) 적용
현행 일본 민법 체계는 강압이나 물리적 폭력이 노골적으로 동반되지 않은 심리적 세뇌 상태, 즉 이른바 '마인드 컨트롤(Mind Control)' 하에 자행된 금전 교부를 완전한 사기로 규정하여 무효화하거나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데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도쿄고등재판소가 통일교의 소위 반성 조치를 "근본 원인을 부인하는 일시적 모면 대응"이라 일갈하며 사기 행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듯⁵, 영감상법이나 종말론적 공포심, 그리고 조상의 원한이라는 망상을 주입하여 유도한 현금 행위는 당사자의 온전한 자유의지를 중대하게 침해한 법률행위적 기망(欺罔)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등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용되는 '특별 청약 철회권(Cooling-off)'을 종교 단체의 고액 기부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고 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취약성(가족의 질병, 사업 실패에 따른 빈곤 등)이나 우울증에 기인한 절박한 심리 상태에서 재산을 넘긴 후 정상적인 판단력을 회복했을 때, 조건 없이 현금을 취소하고 반환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개념인 '취약 소비자의 영성 보호권'이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종교 2세(축복2세) 피해자의 보편적 인권 회복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전방위적 생태계 구축
현재 통일교 사태에서 대중의 분노를 가장 자아내며 야마가미 데쓰야 범행의 기저에 흐르는 거대한 모순은, 자신의 자유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특정 교단에 속해 태어나 부모의 맹목적인 교리 추종 탓에 정서적 세뇌와 경제적 빈곤, 그리고 아동 학대의 환경에 무방치되었던 이른바 '종교 2세 신자(축복2세)'들의 인권 유린 문제다.² 정부 차원에서는 단순히 교단의 재산을 동결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넘어서, 수십 년간 정신적 지배를 당하다 탈퇴를 결심한 이들 종교 난민 2세들을 심리 트라우마와 무기력증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전문적인 힐링 재단 및 정신건강 센터를 국비로 확충해야 한다. 특히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재정적으로 궁핍한 한계 상황에 내몰려 취업 시장에서 낙오된 이들의 사회 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긴급 주거 지원, 기초 직업 훈련, 신용 불량 상태의 회생 절차 대행 등 입체적인 복지 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며 법안 통과 시 약속했던 향후 3년 내 실효성 재검토 조항 역시, 처분 제한을 넘어 이들 사회적 약자 계층의 근본적인 인권 회복으로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⁹

결론

일본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와 도쿄 1심 및 2심 재판부의 준엄한 인용 판결은, 단순히 한 특정 종교 교단과의 정치적 결별을 넘어선다.² 이는 종교의 자유라는 신성불가침의 미명 하에 묵인되어 온 조직적 금전 착취, 기망적 영감상법, 그리고 가정 파괴라는 극단적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민주주의의 국가 시스템이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중대하고 역사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포하는 것이다. 직접 확인된 최소 1,500명의 현금 피해자와 약 204억 엔 규모에 달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배상 청구액은 일부 광신도들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수백, 수천 가정을 연쇄적으로 도산시키고 개인의 영혼을 갇아먹은 '구조적 재난'으로 사법부로부터 재정의되었다.²

교단 측은 온라인 예배와 소규모 모임을 축으로 한 임의단체로의 지하화 전환 시도, 홋카이도 등지에

포진한 천지정교를 비롯한 유관 종교법인 우산망으로의 편법적 자산 빼돌리기 시도, 대형 변호인단을 대거 대동하여 대법원 특별항고 최종심까지 시간을 지연시키는 법률적 '침대 축구' 전술을 집요하게 병행 구사하며 거대한 이권 제국의 생명줄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³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일본 주류 정치권과 입법부는 대의민주주의 합의 과정을 거쳐 부당기부권유방지법의 제정과 부동산 처분 사전 통지 의무, 재무 투명화 조치법을 연달아 통과시키며 과거 자민당 시절의 부적절한 정교유착 오명을 벗어던지고 통일교에 대한 촘촘한 입법적 포위망의 올가미를 조여오고 있다.⁷

이러한 일본 사회의 거대한 체제 혁신은 대한해협을 건너 지정학적 탯줄이자 모체인 한국 통일교 본단에 되돌릴 수 없는 직격탄을 날리며 치명적인 재정 고갈과 함께 교리적 자기모순의 위기를 강제하고 있다.⁵ 더욱 중요하게는 수백만 명의 유사 범죄 피해가 누적된 한국 내에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에 관한 입법' 제정을 맹렬히 압박하는 강력한 사회적 파동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진보적 유럽식 유사종교 제재 모델을 수입하기 위한 명분과 입법 투쟁의 마중물을 제공하고 있다.¹³

결국 한일 양국의 사법부, 국회, 시민단체, 학계가 구축해야 할 최전방 안보선은 법리 해석의 미세한 사각지대를 치밀하게 파고드는 지능적 교단들의 교묘한 자산 은닉 우회 전술을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실효적 '재산 동결 자동화 시스템'을 양국 간 공조로 완비하는 것에 있다. 인간의 연약한 영성을 볼모로 세뇌와 기망의 범죄를 자행하는 사이비 포교 사기를 중범죄로 단죄하는 국가적 강제 장치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진화시켜야만 한다. 이를 통해 종교 본연의 영적 평안 제공 및 구원의 가치에서 궤도를 이탈해 착취 카르텔이자 범죄 복합체로 변질되는 것을 억제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천부적 기본권과 땀 흘려 일군 경제적 존엄을 안전하게 수호하는 국가 본연의 준엄한 책무를 다해야 할 역사의 변곡점에 우리는 서 있다.

참고 자료

1. 벼랑 끝 통일교, 한국에선 수사받고 일본에선 해산 위기 - 시사IN, 3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92>
2. 일본, 통일교 해산에 속도...일본서 정말 사라질까 | 서울경제, 3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m.sedaily.com/article/20016220>
3. 日법원 2심도 “통일교 해산”... 가정연합 “특별항고” - 세계일보, 3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304517551>
4. '뭐 180명?' 발칵했던 日.."통일교 해산" 근황 보니 [뉴스.zip/MBC뉴스] - YouTube, 3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ObcP1516cKM>
5. [CBS News] With the dissolution of the Japanese Unification Church, what is the fate of the Korea... - YouTube, 3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kTf6f9fJJWI>
6. 일본 1심은 통일교 '해산' 명령...“악질적 헌금 강요” / KBS 2025.12.17. - YouTube, 3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UbU1ztfLPVc>
7. 第210回国会 本会議 第13号 (令和4年12月6日 (火曜日)) - 衆議院, 3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kaigiroku.nsf/html/kaigiroku/000121020221206013.htm
8. 일본 1심은 통일교 '해산' 명령...“악질적 헌금 강요” / KBS 2025.12.16. - YouTube, 3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JXeUn60_D6s
9. 立憲民主党国会レポート2024 - 立憲民主党 - 立憲民主党, 3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cdp-japan.jp/visions/diet-report/2024/3-10>
10. [이슈] '통일교 게이트' 먼저 터진 일본 근황...'해산' 명령에도 굳건한 '천국 궁전'/2025년

- 12월 22일(월)/KBS - YouTube, 3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LtztKEoP-HA>
11. 일본 통일교, 해산 명령 불복 '특별 항고' 결국 최고재판소로 | 지금 이 뉴스 - YouTube, 3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QsmfZjeuKZs>
 12. 통일교 피해자 구제 특례법안 논란 - 현대종교, 3월 14, 2026에 액세스,
<http://www.hdjongkyo.co.kr/news/view.html?section=22&category=1002&no=19733>
 13.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마련해야 - 한국기독교공보, 3월 14, 2026에 액세스,
<https://m.pckworld.com/article.php?aid=9622774891>